

인천지방법원 2021. 10. 6 선고 2021가단217034 판결 [이득상환금(시효중단 확인의 소)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1. 8. 25.

판 결 선 고 2021. 10. 6.

주 문

1.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. 1. 13. 선고 2010가소211232 이득상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확인한다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는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(이

법원 2010가소211232)를 제기하였고, 2011. 1. 13.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(이하 '전소 판결'이라 한다)을 선고받아 2011. 2. 25.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전소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므로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.

판사 장인혜